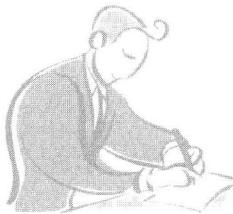


진폐근로자 보호업무 회고



이영문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본부장

월간 ‘산업보건’ 2월호에 ‘해산’ 선생님께서 기고하신 ‘검은 전사들의 진폐증’을 읽으면서 잠시 잊혀져 있던 필자와 진폐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고 싶어졌다. 노동부 산업안전국 진폐업무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관련 자료를 찾아보던 중, 제일 먼저 떠 오르는 것은 땀과 탄진으로 새까맣게 얼룩진 얼굴에 또렷한 눈빛과 유난히도 하얗게 보이는 이를 드러내고 해맑게 웃음짓는 광산 근로자의 모습이다. 이들은 작업을 마친 후 광차를 타고 간 밖으로 나와서는 간내에서 먹었던 빙 알루미늄 도시락 통을 흔들면서 퇴근하곤 하였는데,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린다.

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난방과 취사 연료로 사용하였던 연탄의 주원료인 석탄을 채탄하고, 제조업과 발전소를 가동시키는 에너지원인 무연탄을 공급하기 위해 ‘산업역군’으로 불리면서 지하 2~3천 미터 막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굴진과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던 약 9만여명의 광산근로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매일 탄가루가 비산되는 막장에서 가쁜 숨

을 내쉬면서 청춘을 보낸 그들이 지금은 거의 60~70세가 되었을 터인데 건강은 현재 어떠한지 궁금하다.

80년대 후반부터 국민 소득이 점차 증가하면서, 가정과 산업의 에너지 소비가 연탄에서 고급 연료인 석유와 LPG로 생활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민영탄광은 급격한 경영난으로 폐광되면서 탄광지역사회에 불황이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을 적극 시행하였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받고 탄광지역을 떠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던 70년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약 17~18년간 고환, 영월, 문경, 화순, 보령 등의 지역에서 연평균 약 9만여명의 근로자가 석탄광업에 종사하면서 무연탄 등을 채탄하였으나, 198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4년에는 약 5,400여명이 석탄광업에 종사하고 있다(2004년도 노동부 산업재해발생 통계 인용).

1971년부터 2004년까지 34년 동안 탄광에서 무연탄 총 4억 6,984만톤을 생산하여 각 가

정과 전 산업의 에너지로 사용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광업에 종사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총 207,019명이다. 이중 채탄작업 등을 하다가 혹은 진폐에 이환되어 요양 후 사망한 근로자는 11,266명이며, 진폐 등 직업병에 이환되어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자는 29,621명이고, 2004년 한 해 동안에도 진폐증으로 사망한 근로자수는 453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직업관련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원인 중 진폐로 인한 사망이 단연 1위로 나타나고 있다(참고: 강릉시 전체인구 228,232명, 양양군 전체인구 29,130명). 또한 같은 기간인 34년 동안 요양·휴업·장해·유족 등으로 지급된 산재보상금은 무려 2조 7,709억원이며, 간접손실까지 합한 경제적 총 손실은 13조 8,545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통계 인용).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우리나라 국민들이 GNP \$12,000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음은 위와 같은 광산근로자의 고통과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스럽게도 진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석탄산업합리화사업 등으로 국가가 탄광지역의 발전과 진폐근로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러운 시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 국가경제 발전을 위하여 겪은 희생과 고통을 생각한다면 진폐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더 많은 보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과에서 진폐업무담당 행정사무

관으로 근무하면서 진폐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진폐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그 당시 개선한 내용을 되돌려 생각해보면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많아 부끄럽다.

진폐판정 기간 단축

진폐이환자는 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가족들과 환자는 국가로부터 산재요양과 장해보상 및 진폐위로금이 하루빨리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당시 노동부예규에 의하면 진폐판정의 일관성, 공평성 및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탄광지역의 병의원에서 촬영한 광산근로자의 X-선 직접촬영필름의 1차 판독을 노동부 본부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진폐건강진단실로부터 진폐판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90~110일 정도 소요되었다.

판정기간의 장기화로 진폐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상당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ILO에서 제작한 진폐판독 표준 X-선 필름을 복사하여 탄광지역 병의원에 종사하는 방사선 및 결핵전문의 57명에게 표준필름을 배포하고, 판독교육을 이수한 진폐 건강진단실시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폐정밀진단 대상을 판정할 수 있도록 진폐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진폐판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진폐환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아직도 진폐환자 당사자나 가족들은 진폐판정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진폐업무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담당자는 진폐근로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진폐근로자 자녀 중·고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진폐합병증 치료 후 장해등급을 받았거나 합병증 없이 진폐장해위로금을 수령한 자의 자녀에 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합병증으로 요양을 받고 있는 진폐환자와 진폐관리구분 판정 후 장해등급을 받고서도 정부로부터 진폐위로금을 수령하지 못한 근로자의 자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폐건강진단결과 진폐증으로 판정이 확인된 자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동부예규를 개정하여 진폐이환자가 자녀교육비로 인한 걱정과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진폐로 사망하여 산재보상금과 진폐위로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자녀는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을 사망근로자 자녀에게도 즉시 장학금을 지급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현재에는 진폐에 이환된 대부분의 근로자는 거의 고령이므로 동 제도에 따라 혜택 받는 진폐근로자의 자녀도 점차 감소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폐예방사업 확대

우리나라 굴지의 직업병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석탄광업에 대한 진폐예방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어 공단을 설득하여 1992년 8월 태백, 영월 등 5개 무연탄광업소의 굴진, 채탄, 운반, 선탄작업 등에 대한 정밀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개내 작업환경 개선방법, 보호구 지급, 필터의 적정 교체시기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진폐예방에 얼마나 공헌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진폐근로자에게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제도의 개선보다 더욱 절실한 것은 진폐합병증으로 요양 중 가족으로부터 벼름받은 사례가 허다함으로 이들에게 진폐업무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사회적인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1년말 동해병원 진폐환자 위문시 진폐환자 중 한분이 ‘옛날 탄광이 잘 돌아갈 때에는 탄광에서 연말연시와 추석에 많은 위문품을 들고 찾아와 위로해 주었으나 지금은 탄광이 전부 망해버려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쓸쓸하다’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다. ‘일과 사람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 임직원만이 라도 연말연시와 추석의 불우이웃돕기 행사시에는 비가역성 질병인 진폐와 합병증으로 투병하는 분들께 훈훈한 마음이깃들 수 있도록 위문해 줄 것을 기대해본다. ♪